

시물레이션골프위원회규정

제정 2017. 8.23.

개정 2020. 9.24.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 4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시물레이션골프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0. 9.24.>

제2조(목적) 위원회는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스크린골프의 보급과 골프대중화 기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경기위원 양성을 통한 올바른 스크린골프문화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이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위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스크린골프에 관한 기본방침 자문 및 건의
3. 스크린골프 경기규칙 제정
4. 스크린골프 경기위원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② 시·도 협회는 대회와 관련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10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2. 정관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9.24.>
3.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4. 현 직계비속이 골프선수로 당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
5. 골프선수를 레슨하고 있는 자(교사 및 교수 제외)
6. 골프 관련 유급 직장을 겸직하는 자
7.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8.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9.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겸임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자격)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직계 존비속 결혼 또는 사망, 본인 결혼, 입원 치료 등) 없이 매년 협회 주최·주관 대회 수 3분의 1이상 대회에 참가

하지 않을 경우

5. 판정(틀 적용) 오류로 연간 경고 3회 이상 받았을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8. 기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본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역할 및 판정

제13조(경기위원 배정) 대회별 경기위원의 구성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별 임무는 위원장이 배정한다.

제14조(위원 역할 및 판정) ① 위원은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해 최선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경기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경기 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경기결과를 대회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협회 규칙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위원의 품위) ① 위원은 협회에서 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과 위원 행동강령(별표 1, 별표 2)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규정’, 협회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 ④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위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위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⑥ 위원으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
- ⑦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
- ⑧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단, 협회와 협의 후 가능)
- ⑨ 위원은 다른 단체에서 주최·주관 등 대회의 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 협회에서 지급한 유니폼을 착용할 수 없다.
- ⑩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회 사업 이외 영리 목적의 개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16조(교육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경기규칙 및 대회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2017.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제4조(구성) 제3항 제9호에 따라 2017년에 위촉되는 위원회 간사는 생활체육처장이 맡는다.

부 칙 <2020. 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위 원 행 동 강 령

1. 모든 경기를 양심과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2. 경기배정 등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해서는 안 된다.
4. 선수, 지도자, 팀 관계자와 비공식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5. 직무 중에는 항상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어느 장소에서나 경기위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6. 활동기간 중이나 퇴임 후에도 경기위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수행 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일체 누설·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선수, 지도자, 팀 관계자와는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규칙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8. 아래 4대 클린심판상은 항상 숙지해야 한다.

1. 골프가 공공의 신뢰와 선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기위원
2. 공정한 스포츠 경기를 위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판정하는 경기위원
3. 스포츠맨십과 골프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실천하며 품격을 지키는 경기위원
4. 올바른 골프문화 소양과 심판 정신으로 스포츠 발전에 참여하는 경기위원

서 약 서

본인은 순수한 자원봉사로서 대한골프협회의 경기위원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신뢰받는 골프문화를 조성하는데 골프인들의 모범이 될 것을 노력한다.
2.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골프인으로부터 신뢰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3. 나는 대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4.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골프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5. 직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6. 활동기간 중이나 퇴임 후에도 경기위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수행 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일체 누설·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활동 기간 중 당해단체와 항상 연락이 가능토록 하며, 업무 수행 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다.

이상과 같이 순수한 자원봉사 의무와 성실한 자세로 경기위원 활동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와 불공정한 판정시비 등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대한골프협회 귀중